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당행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2021.05.21(금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,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 제 27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당행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, 전자등록일[2021.05.21(금)]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따라서 주주(권리자)는 당행의 전자등록일 직전 영업일[2021.05.20(목)]까지 증권 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, 소유 중인 실물 증권(전환대상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주주 조치 사항

-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실물증권 보유 주주는 전자등록일 직전 영업일 전[2021.05.20(목)]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, 계좌에 입고 신청하기 바랍니다.
- 주권 미수령 주주는 전자등록일 직전 영업일 전[2021.05.20(목)]까지 당행 혹은 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3. 당행은 전자등록일 직전 영업일[2021.05.20(목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2021 년 4 월 15 일

주식회사 카카오뱅크

대표이사 윤호영(직인 생략)